#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1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 송갑석·신영대·황운하

신정훈 · 민형배 · 김윤덕

이성만・정춘숙・강훈식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출자자이자 지배주주인 지주회사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의무 지분율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산학협력단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술의 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 법률 제 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본문 중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 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 0"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술지주회사</u> 는 자회사의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의결권 있는 주식의 <u>100분의 2</u>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
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u>100</u> 분의 <u>1</u>
	<u>0</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